

## 부속서 XI

### 제3.16조제4항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

#### 제 1 조

##### 범 위

1. 이 부속서의 목적상, “공동제작물”이라는 용어는 뉴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방송용으로 제작된,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포함한, 기획물을 말한다.

2. 이 부속서에 따라 행하여진 공동제작물은 다음 당국(이하 “권한있는 당국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대한민국 : 방송위원회

아이슬란드 : 교육부

리히텐슈타인 : 문화부

노르웨이 : 노르웨이 영화재단(독립제작사의 공동제작에 대하여) 및  
노르웨이 미디어위원회(TV 방송사와의 공동제작에 대하여). 그리고

스위스 : 연방 문화청

#### 제 2 조

##### 내국민대우

이 부속서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은, 관련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을 조건으로, 그 공동제작에 참여한 각 당사국의 TV 방송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으로 간주된다. 공동제작 재정지원에 대하여는, 각 당사국은 자국의 원칙과 관행을 유지한다.

#### 제 3 조

##### 시장접근

관련된 다른 당사국들에서의 당사국 방송제작물의 수입·배급 및 전시에 대하여는, 각 관련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과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.

#### **제 4 조** **일시 입국**

시행 중인 법률과 규정을 조건으로, 당사국들은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공동제작자가 고용한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인력과 출연자에 대하여 각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을 용이하게 한다. 당사국들은 마찬가지로 공동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일시 반입 및 재반출을 허용한다.

#### **제 5 조** **기여 및 소유권**

1. 각 공동제작자의 기여비율은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20% 이상이어야 한다.

2. 공동제작자는 각각의 투자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기술적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.

3. 제작물 및 재제작물의 복사본의 소유권 및 이용과 원본 제작물에 대한 접근은 공동제작자들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한다.

#### **제 6 조** **언어**

1. 각 공동제작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관련 당사국의 국어로 제작되어야 한다. 하나 또는 여러 당사국의 언어로 제작하는 것은 허용된다. 대본상 필요한 경우, 그 밖의 언어로 된 대사가 공동제작에 포함될 수 있다.

2. 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당사국 국어로의 더빙 또는 자막작업은 그 당사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. 이와 다르게 하는 경우, 관련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 7 조 수 출

쿼타규제가 있는 국가로 공동제작물이 수출되는 경우,

- 가. 공동제작물은, 원칙적으로, 주 공동제작자의 당사국 쿼타에 포함되거나,
- 나. 공동제작물을 수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의 쿼타에 포함될 수 있다.

## 제 8 조 절차규정

공동제작에 대한 절차규정은 첫 번째 공동위원회에서 제정될 수 있다.